

심 사 보 고 서

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31
----------	-----

2025. 4. 30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안지윤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5년 4월 22일

-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 · 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안지윤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인용법령 명칭이 잘못 인용된 것을 수정하며,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를 수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인용법령의 법령명 오기를 정정함(안 제4조, 안 제6조, 안 제7조)

: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

: 「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

: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
-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춘 띄어쓰기 정정(안 제2조, 안 제6조제1항)
: (이하“회관”이라 한다) → 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
: 1천분의 50이상 → 1천분의 50 이상.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- 본 조례안은 인용 법령의 명확한 표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 안 제4조, 제6조, 제7조 등에서 인용된 관련 법령의 명칭을 정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- 이번 개정조례안은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인용 법령의 명칭을 정확히 반영하고, ‘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’, ‘1천분의 50 이상’ 의 용어에 대한 띄어쓰기 정정을 통해 명확성을 제고하였음.
-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정확성과 행정 신뢰성을 높이는 기초적인 정비 작업으로,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(이하“회관”이라 한다)”를 “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1천분의 50이상”을 “1천분의 50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위치) 충북문화예술인회관 (이하“회관”이라 한다)은 충청 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94 번길 7에 둔다.	제2조(위치) ----- 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.
제4조(위탁) ① ~ ③ (생략)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」 및 「충청북도 공유 재산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4조(위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「충청북도 공유 재산 관리 조례」-----.
제6조(사용료) ① 회관의 연간 사 용료 요율은 1천분의 50이상으 로 한다.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, 납부방 법 등은 「충청북도 공유재산관 리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6조(사용료) ① ----- ----- 1천분의 50 이상- -----. ② ----- -----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 리 조례」-----.
제7조(운영비의 지원) ① (생략) ②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지방보조 금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7조(운영비의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「충청북도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」-----.